

서울 ~ 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차]변경 실시협약서

2020. 12. 22.

국 토 교 통 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2차) 변경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11년 8월 29일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2016년 5월 20일자 변경실시협약으로 변경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본 사업 진행중 출자자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이하 “본건 자금재조달”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본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반영함으로써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 다음과 같이 (2차)변경실시협약(이하 “이 변경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3조(용어의 정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36. 본 도로: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협의내용 보완 사업제안서에서 특정된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구간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으로부터 경기도 덕양구 강매동 구간 중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35.6km의 도로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등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6. 본 도로: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협의내용 보완 사업제안서에서 특정된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구간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으로부터 경기도 덕양구 강매동 구간 중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u>35.2km</u> 의 도로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등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 3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총사업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u>14,793.44</u> 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및 건설보조금 금 9,003.83억원을 제외한 <u>5,789.60</u> 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u>14,849.95</u> 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및 건설보조금 금 9,003.83억원을 제외한 <u>5,846.12</u> 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제 4 조 (공사비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공사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u>5,695.00</u> 억원으로 한다.	공사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u>5,835.70</u> 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u>2,974.69</u> 억원(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12> (운영비용)과 같다.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u>2,954.48</u> 억원(법인세 제외)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12> (운영비용)과 같다.

제 6 조 (사업수익률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u>5.40%</u> (세후 <u>5.05%</u>)로 하고,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u>4.33%</u> (세후 <u>3.86%</u>)로 하고, 본 협약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실시협약 제7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① 자금제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u>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u>	① 자금제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u>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자금제조달 발생시점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u>

제 8 조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제7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인접한 대체도로 및 철도의 신설, <u>연결도로의 개통지연</u> 포함)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인접한 대체도로 및 철도의 신설 포함)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부록의 변경)

실시협약의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3, 별표15는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3, 별표15로 각각 변경한다.

제 10 조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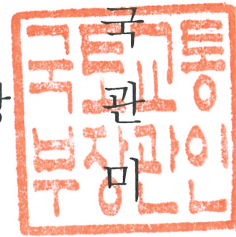
제 11 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 발생)

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22일

대 한 민
국 교 부
김 통 장



서 울 문 산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정 대

